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 현 찬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이현찬 의원입니다.

지난 11월 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,

현행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발생 시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·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,

이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험도 평가 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